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관세행정 분야 추천기업 모집 공고

관세청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에 관세행정 분야로 수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관 세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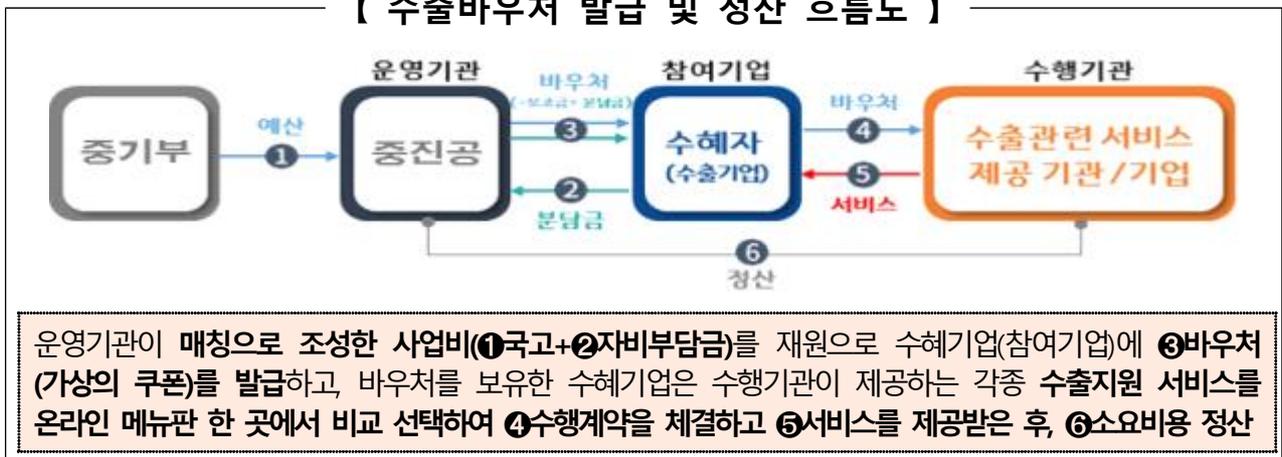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관세행정 분야에서 수출실적이 있거나,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고 있거나, 내수기업으로서 향후 수출예정인 중소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추천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하기 위함

\* 내수·수출 중소기업에게 15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의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25.12.15.) 참고

【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



운영기관이 매칭으로 조성한 사업비(①국고+②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수혜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 한 곳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을 체결하고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모집 규모

- 수출바우처 약 32개사 내외

사용기간 : 2026. 2. 1. ~ 2026. 11. 30.(10개월)

\* 사용기간 내 이용분에 한해 정산가능

(단, 전시회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최하는 건에 대해서 정산 가능)

추천부처/주무부처 : 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발급하고, 해당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수출바우처누리집(www.exportvoucher.com) 내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지원대상 및 한도

- 수출 규모별·역량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지원한도 내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 적용

**【 지원대상 및 한도 】**

(단위 : 백만원)

지원트랙	지원 대상	지원한도	국고보조율
내수기업	수출액 1,000불 미만	30	(매출액 기준) ~100억원 : 70% 100~300억원 : 60% 300억원~ : 50%
수출초보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	
수출유망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	
수출성장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수출강소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주요 이용 가능 서비스(예시)

- 품목분류/원산지 사전심사, 관세 대응 전문 컨설팅 등 비용
-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비용, 인증수출자 인증 컨설팅 비용
- 법률자문, 홍보, 해외시장조사, 지식재산권 등록 컨설팅 등 비용

## 2. 신청요건

### □ 신청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 다 음 】

- ① 공고일 현재, 수출실적이 있거나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고 있는 기업
- ② 내수기업으로 향후 수출예정인 기업
  -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 아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6.2.1일 기준)
  - \* 예시 : 산업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식품부(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해수부(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자체(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 최근 2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4.2.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 '26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단, 경영 독립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

**[ 특수관계기업의 정의 ]**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제23호에 따름  
 [예]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B기업 등(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침을 참고 요망)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제23호>

22. "특수관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나. 대표자가 단독으로 또는 대표자와 특수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또는 특수이해관계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또는 특수이해관계인이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다.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제나목의 자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제나목의 자가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23. "특수이해관계인"이란 대표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을 현장평가 시 점검할 수 있음

-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는 참여 불가
  -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은 기업(단, 질서벌 처벌은 제외)
- ◆ 관세청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21년도 이후)

### 3.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전국 본부·직할세관 접수처에 E-mail로 서류 제출(7.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이 아님에 주의
-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바우처 방식의 수출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

구분	내용
접수기간	■ '26. 3. 6.(금) ~ '26. 3. 12.(목) 18시까지
접수처	■ 기업 관할세관* 접수처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 [참고사항] '25년부터 평택세관에서 중부권(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추가 관할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신청 건은 접수 불가 ○ 접수 후 접수결과 안내메일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이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인 전화 필요(해당 접수처)
서식교부	■ 공고 시 서식 첨부
신청절차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 후, 관할세관 접수처에 E-mail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압축하여(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권장(압축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 ○ (메일 제목) 수출바우처 신청_기업명_소재지

#### □ 신청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필수	①	참가신청서	서식 작성 제출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작성 제출
	③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위텍스(wetax.go.kr) 등에서 발급
	⑤	'22~'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⑧	관세청 수출통관실적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 택일('23년~'25년)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선택 (희망시)	⑨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KTNET 발급본
	⑩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⑪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⑫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외화입금증명서 필수기재 : 신청인, 송금인, 일자, 금액(실적기준은 '25년 입금 기준)
	⑬	지점 수출 합산 희망시	- 직수출 : 무역통계진흥원 혹은 무역협회의 실적 증명 - 간접수출 : KTNET에서 발급한 간접수출 실적증명원 - 그 외 수출 : 신청서류 ⑩, ⑪, ⑫
선택 (가점)	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증서	가점항목별 관련 증빙 확보·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 증서 서류만 인정
	⑮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⑯	'25년도 대미 수출기업	

#### □ 관세 행정 관련 가점 항목

구분	가 점 항 목	가점
1	(⑭ 서류) 「관세법」제255조의2에 의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을 받은 기업	3
2	(⑮ 서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	2
3	(⑯ 서류) '25년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2
4	「관세법」제255조의7에 의한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기업	1

- 1) 가점항목은 서면평가 시 별도 확인
- 2) 위 3개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은 최대 5점 부여

####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①~③ 서류) : 첨부 서식 1~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스캔본(또는 PDF파일) 제출
- (④~⑥ 서류) :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사이트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

- (⑦ 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제출
    -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서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중에서 선택 후, 발급하여 제출(내수기업도 제출 必)
- ※ 수출바우처 사업은 직수출 및 간접수출, 서비스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을 동일하게 인정받아 수출단계 설정이 가능 (단, 기타수출(제출 시)은 기업의 희망 시에만 합산)

- 직수출 (상품 및 재화 수출실적)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택 1)
- 간접수출 :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기타수출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외국인도수출, 서비스 수출
  - 실적 증빙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의 공식서류 제출 시만 인정
  - (⑩, ⑪, ⑫ 신청기업 제출 서류 참조)
- 참고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직수출, 간접수출 등, ⑬ 신청기업 제출 서류 참조)

- (⑨~⑬ 서류) : 해당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
- (⑭~⑮ 서류) : 보유중인 증서의 스캔본 제출\*
  -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⑯ 서류) : '25년도 미국으로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수출신고필증 등)
- 접수 마감일 18:00 초과 신청 건은 미접수 처리
-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일정, 결과발표 등의 안내가 제공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의 제출거부·고의 누락 시 선정 제외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비공개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4. 선정방법

### □ 요건심사 및 서면평가

- (요건심사) 제출서류(증빙자료 포함) 및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기업성장 추이, 해외진출 역량 및 성장가능성 등 평가
    - (계량) 최근 3년간('23~'25년)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 수 등
    - \* 단, '25년 결산 미완료 기업은 '22~'24년 재무제표 적용
    - (비계량) 기업현황의 충실성, 수출마케팅 준비현황·목표의 구체성 및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제외

### □ 추천기업 선정

- 결격요건 심사, 서면평가 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

### □ 진행절차



## 5. 유의사항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산업부·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 선정 불가\*

\* 예시)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 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사업을 활용하여 중복 정산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 수출바우처사업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30%이상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바우처 사용률이 85%미만일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바우처 사용률	참여제한
70%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
70% 이상 ~ 85% 미만	5점 감점(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85% 이상	제한 없음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정산 시 운영기관이 보완요구를 10일(영업일 기준)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산 불가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수행완료'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바우처 사용일정에 유의

□ 동일 법인이라도 한 개의 사업자(사업자번호 기준)만 선정 가능하며, 수출바우처사업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이 이용한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 예시)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 본사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지점(혹은 공장)으로 신청 및 선정 → 지점(혹은 공장)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 최종 선정 이후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필수이며, 공인인증서 발급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 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법인 범용인증서 발급 약 11만원, 용도제한인증서 발급 약 1만1천원 비용 발생)
- ◆ 인증서 발급시 **범용인증서는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이 소요**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단, 직접 방문 시에는 당일 발급 가능,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동 사업은 '24년도 매출액 규모(혹은 최종결산년도)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이 차등\*되며, 협약시 기업분담금이 발생하는 사업임

\* 국고지원보조율 차등 :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매출액 100억~300억원 미만 :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6.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5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 등록

###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관세대응 패키지	관세피해 대응 관련 서비스	대체시장 발굴,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 현지 분쟁 해결 등 관세 대응 관련 서비스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 및 부가가치세는 정산 불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정산가이드 및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 7. 접수 및 문의처

###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접수처〉

세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6 02-510-1377	seoulfta@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3	busansupport@korea.kr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72	incheonsupport@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3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2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6	ptfta@korea.kr

※ [참고사항] '25년부터 평택세관에서 중부권(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추가 관할

○ (사업총괄)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042-481-1105)



[서식2-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kotra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li> <li>▶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li> <li>▶ 중소기업 관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중소기업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NET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li> </ul>
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li> <li>·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li> <li>·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li> </ul> </li> <li>▶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NET,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행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li> <li>·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등 ·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 코드,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li> </ul> </li> <li>▶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li> </ul> </li> </ul>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kotra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li> <li>▶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li> <li>▶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KINET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li> </ul>
제공받는 자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I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수행사 등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li> <li>▶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li> </ul>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 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 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li> <li>·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li> <li>·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li> </ul> </li> <li>▶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I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li> <li>▶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수행사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li> <li>▶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li> </ul>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span>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li> <li>▶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li> </ul>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kotra에 제공하여, 중기부·중진공·kotra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span>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span>

5. KNET 무역정보 활용·제공 동의

제공·조회 목적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 이용시 거래지원 및 편의제공 ▶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등 거래선 확대 지원 ▶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 무역사기 방지를 위한 공정 무역환경 조성 등
무역정보 활용·제공 항목	▶ 업체별 취급품목 or 품목별 업체정보 * 취급품목(품목분류번호, 품명), 업체정보(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 업체별 직·간접 수출입 실적을 기간별로 누적인 통계 ▶ 기타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전자무역문서 항목별 정보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KNET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ex. 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무역진흥기관 : 무역관련 행정기관,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 ▶ 국내외 바이어(품목별 업체정보에 한함) ▶ 공공/민간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기타 상기 무역정보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자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원 시 기업평가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및 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법인), 지방세납세증명(법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기부·중진공·지방청·kotra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b>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b> 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기부, 중진공, kotra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지자체, 지역혁신기관)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관련 중진공 주관 사업 안내,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본인은 위와 같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담당자명 :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 ① 중소기업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수출마케팅 세부 추진 계획

가. 기업현황

회사명	설립년월일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지정이력(연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생산품									
매출액 (천원)	'23년		'24년		'25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3년		'24년		'25년				
수출액 (단위 : 달러)	'23년		'24년			'25년			
	직접	간접	합계	직접	간접	합계	직접	간접	합계
수출국가	(총 개국)								
수출상품(제품)									

나. 제품(상품)현황 및 수출필요성

○ 수출 제품(상품) 개요 (내수기업의 경우, 수출예정 품목 기술)

구분	세부 내용			
생산(취급)품목*				
제품 개발현황(택일)	개발중(R&D진행)	개발완료	시제품 생산	양산단계
용도, 특성 및 수출현황, 수출 가능성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시장점유율	국내 (Domestic)		국외 (Overseas)	
	- 시장규모 :  - 시장점유율 :		- 시장규모 :  - 시장점유율 :	
경쟁업체 현황**	국내 :			
	국외 :			

\* 주요 생산(취급) 품목 개요는 해외진출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

\*\* 경쟁업체 현황은 경쟁업체명, 시장점유율 등 기술

○ 수출(확대) 필요성

세부내용	
------	--

다. 목표시장 및 목표고객군

○ 목표시장

희망(기) 진출시장	
진출 희망국가	
선정사유*	
자체진행현황	

\* 진출 희망지역의 시장현황(현지 시장의 니즈), 자사 제품(상품)의 경쟁력 등을 기재

○ 목표고객군

목표고객군	
선정사유*	

\* 제품 및 진출시장의 특성상 목표고객을 설정한 사유를 기재

라. 해외마케팅 준비현황

○ 수출 준비현황

수출인프라 구축도	
전담인력	
해외시장정보 획득 여부/경로	
해외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여부	
기수출 여부	
기타	

마. 수출마케팅 목표

○ 향후 목표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1년내)</li> <li>- 중기 (2~3년)</li> <li>- 장기 (5년)</li> </ul>
------	--

바. 수출마우처 이용계획

세부내용	<p>&lt;작성예시&gt;</p> <p>① FTA 활용방안 컨설팅(00백만원)</p> <p>②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및 갱신(00백만원)</p> <p>③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00백만원)</p> <p>④ AEO 신규 공인 및 갱신시 컨설팅(00백만원)</p>
------	--